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90 발의연월일: 2025. 5. 13.

발 의 자:최민희·김 현·문금주

박지원 • 박해철 • 복기왕

이광희 • 이기헌 • 장종태

정동영 · 정일영 · 한정애

황정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3분의 2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
보추천위원회) ① ~ ⑥ (생	보추천위원회)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⑦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⑦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u>3분의 2 이</u>	<u>과반수의</u>
<u>상의</u>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